행정규제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윤재옥의원 대표발의)

의 안 번 호 17093

발의연월일: 2022. 8. 31.

발 의 자:윤재옥·박성민·김희곤

이명수 · 배준영 · 유상범

태영호 · 양금희 · 김용판

윤창현 의원(10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과도한 행정규제의 신설을 억제하고 사회경제적 상황이 변하였음에도 규제가 계속 유지되지 않도록 하여 규제의 타당성이나 실효성을 보장하기 위해, 일몰기한이 경과하는 경우 해당 규제가 자동 으로 폐지되는 효력상실형 규제일몰제와 더불어 일정한 기간을 정하 여 규제를 재검토하는 규제재검토 제도를 시행하고 있음.

제도의 도입 후 재검토 규제는 많아졌지만, 재검토기한 도래 시 제도적 취지에 부합하는 수준으로 규제에 대한 실질적인 재검토가 이루어져 왔는가에 대해서는 회의적이며, 규제를 폐지·완화하기보다 재검토 규제로서 존속시키는 경우가 많아 제도의 목적을 충족시키고 있지못하다는 지적이 많음.

이에 본 개정안은 규제영향분석서 작성 시 '규제의 존속기한·재검토 주기 설정 및 미설정사유'를 포함하도록 하고, 중앙행정기관 내 규제 재검토 실시조직(자체규제개혁위원회)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도록 하는 한편, 규제재검토 시 재검토결과서를 작성·보관·공개하여 후속으로 이루어질 재검토에 활용될 수 있도록 하며, 규제개혁위원회가 각급 행정기관의 규제재검토 제도의 운영실태와 제도 개선사항을 확인·점검하도록 하여 규제재검토 제도의 실효성을 제고하려는 것임(안 제7조·제8조, 제8조의2 신설 및 제34조).

법률 제 호

행정규제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행정규제기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1항에 제7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조 제3항 전단 중 "정하고"를 "정하고 자체규제심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로 하며, 같은 조 제4항 중 "공표방법"을 "공표방법, 자체규제심사위원회의 구성"으로 한다.

7의2. 규제의 존속기한·재검토기한(일정기간마다 그 규제의 시행상황에 관한 점검결과에 따라 폐지 또는 완화 등의 조치를 할 필요성이 인정되는 규제에 한정하여 적용되는 기한을 말한다. 이하 같다)의 설정 근거 또는 미설정 사유

제8조제1항 중 "재검토기한(일정기간마다 그 규제의 시행상황에 관한점검결과에 따라 폐지 또는 완화 등의 조치를 할 필요성이 인정되는 규제에 한정하여 적용되는 기한을 말한다. 이하 같다)을"을 "재검토기한을"로 한다.

제8조의2를 제8조의3으로 하고, 제8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8조의2(규제의 재검토) ①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규제의 재검토기한 이 도래하는 경우 제7조제4항에 따른 자체규제심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해당 규제의 시행상황을 점검하는 등 재검토를 실시하고 그 결과에 따라 규제의 폐지 또는 완화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②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른 재검토의 결과보고서를 작성· 보존 및 공개하고, 다음 재검토를 실시할 때 그 내용을 반영하여야

③ 재검토의 실시 절차, 결과보고서의 작성·보존 및 공개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하다.

제34조제1항 중 "규제제도의"를 "규제제도 및 규제재검토 제도의"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여론조사를"을 "제도·기반연구 및 여론조사를"로 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규제영향분석 및 자체심사에 관한 적용례) 제7조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규제영향분석을 실시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3조(규제의 재검토에 관한 적용례) 제8조의2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규제의 재검토기한이 도래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7조(규제영향분석 및 자체심사)	제7조(규제영향분석 및 자체심사)
①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규제	①
를 신설하거나 강화(규제의 존	
속기한 연장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하려면 다음 각 호의 사	
항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규	
제영향분석을 하고 규제영향분	
석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1. ~ 7. (생 략)	1. ~ 7. (현행과 같음)
<u><신 설></u>	7의2. 규제의 존속기한·재검토
	기한(일정기간마다 그 규제
	의 시행상황에 관한 점검결
	과에 따라 폐지 또는 완화
	등의 조치를 할 필요성이 인
	정되는 규제에 한정하여 적
	용되는 기한을 말한다. 이하
	<u>같다)의 설정 근거 또는 미</u>
	<u>설정 사유</u>
8.•9. (생 략)	8.•9. (현행과 같음)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③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제1항	③
에 따른 규제영향분석의 결과	
를 기초로 규제의 대상·범위·방	

법 등을 <u>정하고</u> 그 타당성에 대하여 자체심사를 하여야 한 다. 이 경우 관계 전문가 등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여 심사 에 반영하여야 한다.

④ 규제영향분석의 방법·절차와 규제영향분석서의 작성지침 및 <u>공표방법</u>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8조(규제의 존속기한 및 재검 토기한 명시) ① 중앙행정기관 의 장은 규제를 신설하거나 강 화하려는 경우에 존속시켜야 할 명백한 사유가 없는 규제는 존속기한 또는 <u>재검토기한(일</u> 정기간마다 그 규제의 시행상 황에 관한 점검결과에 따라 폐 지 또는 완화 등의 조치를 할 필요성이 인정되는 규제에 한 정하여 적용되는 기한을 말한 다. 이하 같다)을 설정하여 그 법령등에 규정하여야 한다.

② ~ ⑤ (생 략) <신 설>

<u>정하고 자체규제심사위원</u>		
회의 심의를 거쳐		
4		
공표방법, 자체규제심사위원		
회의 구성		
제8조(규제의 존속기한 및 재검		
토기한 명시) ①		
<u>재검토기한을</u> -		
② ~ ⑤ (현행과 같음)		
제8조의2(규제의 재검토) ① 중앙		
행정기관의 장은 규제의 재검		

제8조의2(소상공인 등에 대한 규 제8조의3(소상공인 등에 대한 규 제 형평) (생 략)

제34조(규제 개선 점검·평가) ① 제34조(규제 개선 점검·평가) ① 위원회는 효과적인 규제 개선 을 위하여 각급 행정기관의 규 제제도의 운영 실태와 개선사 항을 확인·점검하여야 한다.

- ② (생략)
- ③ 위원회는 제1항과 제2항에 ③ -----

토기한이 도래하는 경우 제7조 제4항에 따른 자체규제심사위 원회의 심의를 거쳐 해당 규제 의 시행상황을 점검하는 등 재 검토를 실시하고 그 결과에 따 라 규제의 폐지 또는 완화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 ②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제1항 에 따른 재검토의 결과보고서 를 작성·보존 및 공개하고, 다 음 재검토를 실시할 때 그 내 용을 반영하여야 한다.
- ③ 재검토의 실시 절차, 결과보 고서의 작성·보존 및 공개 등 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 로 정한다.

제 형평) (현행 제8조의2와 같 음)

제제도 및 규제재검토 제도의-

- ② (현행과 같음)

따른 확인·점검 및 평가를 객	
관적으로 하기 위하여 관련 전	
문기관 등에 <u>여론조사를</u> 의뢰	<u>제도·기반연구 및</u>
할 수 있다.	여론조사를
④ (생 략)	④ (현행과 같음)